

2026년 고용친화기업 신규선정 모집 공고

대구광역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고용친화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6년 고용친화기업 신규선정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5월 28일
대구광역시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고용친화기업 선정·지원사업
- 사업내용 : 지역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고용친화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
- 인증기간 :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3년간
- 인증기관 : 대구광역시
- 수행기관 : (재)대구테크노파크

2. 선정방향

-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, 지역 경제 및 일자리를 선도할 기업을 우선하여 선정

3. 선정규모

- 5개사 정도 (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4. 신청조건

- ① 대구지역 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 - ②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기업 중, '24년 대비 '25년 근로자 증감률이 대구시 평균고용증감률(0%)보다 큰 기업 (**고용보험가입자 기준**)
 - ③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 3,500만원 및 각종 복지제도 10종 이상인 기업
- * **고용증감률 산식** : (('25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- '2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) / '24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) X 100

5. 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
인증 지원	◦ 대구시장 명의 인증서 수여
맞춤형 고용환경 개선지원	◦ 근무환경개선, 임직원 복지제도 확충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
홍보 지원	◦ On-Off-Line을 통한 기업 광고 및 브랜드 홍보 등 - SNS, 홈페이지, 매체(신문·옥외광고·대중교통), 홍보영상 제작 등 기업홍보 지원
네트워크 지원	◦ 기업 실무자협의회, 워크숍, 실무자 교육, 기업 임직원(가족) 대상 사기진작 행사 등 정보교류 지원 등
인력채용 지원 연계	◦ 신규인력 채용 지원(채용박람회 등), 중앙부처 인건비 지원사업 연계
자금지원	◦ 대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-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지원 :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 - 경영안정자금 : 이자보전율(이자 차액 보전) 우대 ◦ SGI 서울보증 우대보증지원 - 보험료 할인(10%), 보증한도 확대,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등 ◦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-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채납액 없는 경우 3년간 유예
해외진출 지원	◦ 대구시 통상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-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: 해외마케팅, 수출 및 현지화 지원 - 무역사절단 : 시장조사, 바이어 매칭, 전시회 참가, 상담장 운영, 항공료 - 해외전시회 공동관 개별참가 지원사업 우대
기업지원	◦ R&D 및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- 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: 연간 최대 9,000만원 이내(최장 2년) - 스타기업100 육성사업, Pre-스타기업 육성사업 : 신청시 가점
복지제휴시설 연계	◦ 문화시설, 레저, 의료 등 복지 제휴시설 이용 할인 혜택 제공 등

※ 지원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인증 이후 세부내용 별도 안내 예정

6. 선정 절차

선정계획 공고	신청서 접수	요건심사	현장실태조사	최종평가위원회
5/28 ~ 6/30	6/22 ~ 6/30	7월 초	7월 중순 ~ 8월 초	8월말
대구시 & 대구TP	기업 → 대구TP	선정위원회	선정위원회	선정위원회

※ 현장실태조사는 요건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실시하며,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7. 평가방법 및 기준

요건심사(1차) : 선정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현장실태조사 대상기업 선정

○ 심사지표

항 목		심사지표
신 청 기 본 조 건	지 역 소 재	대구지역 내 소재(본사 또는 사업장) 여부
	업 력	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여부
	상시근로자수	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 여부
	고 용 증 가 율	'24년 대비 '25년 고용증가율이 대구시 고용증가율(0%) 이상 증가 여부
	대졸 신입사원 초 임 연 봉	대졸 신입사원(1년차) 초임(初任) 연봉이 年 3,500만원 이상 여부 - 대 상 : '25년도 대졸 신입사원 초임 평균연봉 기준
	복 지 제 도	복지제도 10종 이상 여부
신 청 외 상 대 상	임 금 체 불	'임금체불사업주' 명단 공개 여부(최근 2년)
	산 업 재 해	'산업재해 다발 사업장' 명단 공개 여부(최근 2년)
	장 애 인 고 용	'장애인고용 저조 기업' 명단 공개 여부(최근 2회 연속)
	신용평가등급	신용평가등급 B- 미만 기업 여부(공고일 현재기준)
	공정거래법위반	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여부(최근 2년간)
	기 타	사회적 물의 야기 등 고용친화기업 선정 부적합 여부

현장실태조사(2차) : 선정기준 충족기업 대상 사실여부 검증 및 근로환경 확인

○ 조사내용 : 고용성장성, 고용친화 경영, 청년일자리 평가 항목 및 요건심사 지표 확인 후 정량평가 실시, 기업경영 및 고용현황 등 면담조사

최종평가(3차) : 정성적 평가(서면) 후 상위 기업 순으로 최종 선정기업 확정

○ 평가지표

정량평가		정성평가	
평가항목	평가지표	평가항목	평가지표
고용 성장성 (20점)	◦ 정규직 고용증가량(최근2년간)	청년일자리 (20점)	◦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전과 발전 가능성 ◦ 임금 및 복지 등 청년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
	◦ 정규직 고용증가율(최근2년간)		
고용친화 경영 (50점)	◦ 정규직 비율(평균 정규직 비율)	고용친화경영 (20점)	◦ 고용친화경영을 위한 기업의 노력 정도 등 - 일·생활균형실천,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수, 정년연장 등 고용 안정, 여성·장애인·고령자 등 일자리 배려, 임금체계 개편·협력사 지원 등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, 능력중심 채용 등
	◦ 고용유지율(최근2년간)		
	◦ 복지시설·제도		
	◦ 근로자 월평균 임금		
청년 일자리 (30점)	◦ 청년 채용비율(최근2년간)		
	◦ 대졸초임평균연봉('25년 신규채용)		
	◦ 청년 주평균 연장근로시간		
우대배점(10점)	◦ 고용관련 인증 및 표창 등		
	◦ 육아정책, 산업재해시스템구축		

8. 신청서 접수 및 문의

교부처 : 대구광역시(daegu.go.kr)/정보공개/알림정보/고시·공고

대구테크노파크(dgtp.or.kr)/알림마당/사업공고

대구일자리포털(job.daegu.go.kr)/커뮤니티/공지사항

고용친화기업(goodjob.daegu.kr)/정보마당/공지사항

접수기간 : 2026. 6. 22.(월) ~ 6. 30.(화), 18:00 까지

접수방법 :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☞ 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 시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요망

○ 온 라 인 : 전자우편(goodjob@dgtp.or.kr) 송부

○ 오프라인 :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접수

◆ 접 수 처 : (41256)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,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 1동 7층
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김민기 책임연구원 앞

제출서류

제출서류	제출부수	비고
2026년 고용친화기업 신청서	원본 1부	서식 1
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협약서	원본 1부	서식 2
고용현황 산출 기초자료(엑셀파일) ※ 전자파일 형태로 메일(goodjob@dgtp.or.kr) 송부	전자파일	서식 3
사업자등록증	사본 1부	-
법인등기부등본 (※ 법인기업에 한함)	원본 1부	-

※ 기초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장실태조사 시 별도 확인

문의 및 상담 : (재)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

김민기 책임연구원(☎ : 053-757-3736 / E-mail : larme@dgtp.or.kr)

9. 가점사항

고용 관련 정부·지자체 인증 및 표창 등 수상기업

의무 육아제도 외 기업 자체 육아정책 실시기업

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

○ 산업재해 예방 및 직업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기업, ISO 45001 인증획득 등

○ 고용노동부 등 산업재해 예방 유공 포상기업

대구시 지정 Pre-스타기업, 스타기업100, 파워폴스타기업

10. 유의사항

-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사전 판단하여 신청서 접수
-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 내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,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신청서 등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, 기 지급한 지원금 등은 환수조치 함
-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연차모니터링 및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
- 신청 제외대상 (접수마감일 기준)

✓ 제외 업종 및 사업장

- ① 표준산업분류에서 공공 부문(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), 개인경제활동(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등), 국제 및 외국기관 등
 - *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공공부문(협회 및 단체)을 제외한 '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' 에 포함되는 사업체는 포함
- ②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
- ③ 소비항락업체(단란주점 등), 근로자 파견(경비, 경호 및 탐정업),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
- ④ 건설공사 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
- ⑤ 높은 고용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증가를 산정 시 고용 효과가 과대평가 될 우려가 있는 기업 등

✓ 법규 위반 등 기타 제외 대상

- ①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
- ②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,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
- ③ 의료법,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기업(최근 2년간 과징금 처분 이상)
-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(채불사업주 명단공개)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기업
(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,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채불사업주)
-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(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)에 의거 명단이 공표된 기업
- ⑥ '장애인고용 저조 기업' 으로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개된 기업
- ⑦ 공고일 현재기준 신용평가등급 B- 미만 기업
- ⑧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
- ⑨ 현행법령 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고용친화기업 선정 시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기업
- ⑩ 기타 사업의 목적 및 인증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